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2200062	김승수의원	2024.5.31.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1067	김선교의원	2024.6.27.	
2201184	정부	2024.6.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8.26.)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8.)에
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12.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 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가구원에”로,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의”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의”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은-----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u>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③ ----- ----- ----- -----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를 받고 있을 것

2. 3. (생 략)

④ (생 략)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
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
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
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를 받고 있을 것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가

구원에-----

-----가구원

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④ -----

-----가구원이-----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가
구원이-----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

② -----
-----가구원의-----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
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
 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
 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
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
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없는-----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생계
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육급여-----
 -----.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4. (생략) ② ~ ④ (생략)	-----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